

제 250 호

발행인 :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편집 : 공보실장 손왈수

전화 75-7834

1972. 6. 30

인쇄 : 서울특별시 종합발간실

시보

차 례

이 영우보...
평리요...
1972. 6. 30.
서울특별시 시민과장

- 규 칙
제 1230 호 서울특별시립 위생연구소 직제 3
- 공 고
제 149 호 하천공작물 설치허가 효력 회복 4
제 151 호 서울특별시 파자식품공업 협동조합 해산 4
제 152 호 주거구역 지정공고 4
제 153 호 청산금 납입고지서 공사 송달 4
- 사 령 5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규 칙

서울특별시립 위생연구소조직제를 제정하여 이에 공포한다.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1972년 6월 29일

◎ 서울특별시 규칙제 1230 호

서울특별시립 위생연구소조직제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립 위생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의 조직과 연구소 설치조례 제 6조의 규정에 의한 사무 분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소장) ① 연구소에 소장을 둔다.

② 소장은 지방보건연구관으로 보한다.

③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무를 관리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 감독한다.

④ 소장이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약품화학과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조 (공무원) 연구소에 소장 이외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은 따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4 조 (과) ① 연구소에 약품화학과, 식품화학과, 첨가물과, 대기공해과, 수질공해과와 세균과를 둔다.

② 과장은 지방보건연구관보로 보한다.

다만 약품화학과장은 약사자격증 소지자이어야 하며, 대기공해과장과 수질공해과장은 지방화공기과로 보할 수 있다.

제 5 조 (약품화학과) 약품화학과는 약전약

품, 일반약품, 마약, 독극물, 위생재료, 화장품등의 검사와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6 조 (식품화학과) 식품화학과는 일반식품, 기호식품, 조미식품, 주류, 영양강화식품, 통조림 식품등에 관한 검사와 영양가 측정 및 시험연구를 관장한다.

제 7 조 (첨가물과) 첨가물과는 식품첨가물, 유제품, 이육류 및 그 제품, 용기, 포장, 완구등의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8 조 (대기공해과) 대기공해과는 공장 및 사업장의 조업으로 인한 대기오염물, 위해가스, 소음, 진동의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9 조 (수질공해과) 수질공해과는 공장 및 사업장의 조업으로 인한 하천오염물과, 상수도, 정호수, 공업용수 등 수질 전반에 대한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10 조 (세균과) 세균과는 각종 전염병균, 바이러스, 식중독, 기생충, 식품류의 세균검사, 의약품의 생물학적 검사 및 시험연구에 관한 사항을 관장한다.

제 11 조 (사무장) 연구소에 관인관수, 인사, 문서수발, 회계용도 및 타과주관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을 분장케 하기 위하여 사무장을 두고 사무장은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부 칙

①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1970. 5. 20일자 서울특별시 규칙제 922 호로 공포된 서울특별

시 위생시험소 직제는 이를 폐지한다.

공 고

◎ 서울특별시 공고제 149 호

하천공작물설치허가효력회복

하천공작물 설치 허가의 효력 회복을 하천법 제 70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1972. 6. 24.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허가장소	허가규모	허가목적	준공기간	실효회복일	허가받은자의주소성명
영등포구 문래동 3가 10번지 앞	복개공사 길이 = 397 폭 = 3m~5m 높이 = 2 m	복개후 도로로 사용	실효회복 조치일로부터 1개월 이내	72. 3. 31	영등포구 영등포동 7가 2번지 영일실업주식회사 대표 임봉일

◎ 서울특별시 공고제 151 호

서울특별시과자식품공업협동조합해산 중소기업 협동조합법 제 100 조제 2 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조합을 해산 조치하였기 공고한다.

1972. 6. 27.

서울특별시장

1. 조합명 : 서울특별시과자식품공업협동조합
2. 주소 : 서울특별시중구저동 2가 18-3
3. 대표자 : 이사장 이 화 영
4. 해산일자 : 1972. 6. 27
5. 해산사유 : 행정지시위반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 100 조 제 2 항)

◎ 서울특별시 공고제 152 호

주거구역지정공고

서울특별시 관내 주거지역중 건축법 제 39 조 제 1 항 제 3 호 규정에 의한 지정구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이를 공고 한다.

계획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건축과 및 영등포구청 건축과에 비치하여 관계인에게 보인다.

1972. 6.

서울특별시장

주거구역지정조서

영등포구 신일동 지내 101,795 m²

영등포구 신정동 지내 135,548 "

◎ 서울특별시 공고제 153 호

청산금납입고지서공시송달

청산금 납입고지서를 납입의무자에게 발송한바 있으나 수령인의 주소 또는 거소불명으로 직접 송달이 되지 않아 지방세법 제 52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한다.

-26-

1. 주소또는거소 서울특별시마포구이현동 632 성명(별첨조서참조) 김진성의 9명

2. 구분 청산금납입고지서 72 년수납가. 납부기간 72. 7. 10 까지

나. 납부장소 당시도시계획국 서무과

1972. 6. 28

서울특별시장 양택식

김포 (3차) 청산금 공시송달자 명단

수납번호	물건지	금액	소유자		비고
			주소	성명	
296	등촌동 450	184,921	아현동 632-26	김진성	
361	등촌동 191-65	99,465	만리동 2가 36	임한순	
219	목동 24-41	100,128	시흥군안양읍안양리 183	이승식	
210	목동 29 39	107,771	성수동 2가 331-118	김진웅	
247	목동 25-30 26-6	144,035	서교동 385-8	정인해	
229	목동 7 24	134,424	목동 24-7	민경선	
356	등촌동 191-62	140,252	방화동 산 17	김용수	
242	목동 26-2	235,430	목동 53	이종인	
384	등촌동 191-37	98,186	등촌동 191-37	황범두	
328	등촌동 191-30	63,147	부천군소사읍양곡 4리 510	엄대호	

사령

◎ 1972. 6. 24.

남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사 이동운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남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사보 이종준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남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사보 김종덕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중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사보 문경인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남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원 홍대기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남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원 윤영수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남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원 목영욱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중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원보 황규철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중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원보 홍영길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중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원보 홍택근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남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원보 현병호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남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원보 김창용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중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사 서원도
 청소제 1과 근무를 명함
 중부자동차운수사업소 지방기계기사보 김태기
 자동차정비창 근무를 명함
 남부자동차운수사업소 기한부기계기원보 오현식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남부자동차운수사업소 기한부기계기원보 김수희
 자동차운수사업소 근무를 명함
 성동구 지적기사보 이면우
 경상북도대구시 전출을 명함

경북선산군 지적기사 김 주 복
 서울특별시 전입을 명함
 지적기사보에 임함
 9호봉을 급함
 성동구청 근무를 명함

◎1972. 6. 26.

청소 1 과 지방기계기사 김 복 동
 지방전기기사에 임함
 2호봉을 급함
 만리동배수지사무소 근무를 명함
 중부자동차 소 장 이 민 수
 운수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양노원장에 보함
 남부자동차 소 장 경 필 호
 운수사업소 지방행정사무관
 자동차운수사업소장에 보함

용산구보건소 지방간호기사보 우 애 순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대문구보건소 지방간호기원 강 수 자
 공무원교육원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보건소 지방간호기원보 조 갑 순
 서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남부 병원 지방간호기원보 김 미 순
 중부병원 근무를 명함
 노량진수원지 지방화공기사보 홍 정 선
 사무소 (보통수원지사무소
 과전근무중)

토목시험소 근무를 명함
 영등포 구 지방건축기사보 업 기 철
 건축과 근무를 명함
 영 선 과 지방건축기사보 정 진 환
 (건축과과전근무중) 근무를 명함

주택건설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건축기원 박 회 선
 건축과 근무를 명함
 주택건설과 지방건축기원 이 태 봉

건축과 근무를 명함
 주택건설과 지방건축기원 홍 정 길
 (건축과과전근무중)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주택건설과 지방건축기원 김 영 길
 (건축과과전근무중)
 용산구 근무를 명함

도시계획과 지방건축기원 이 정 행
 서대문구 근무를 명함

주택행정과 지방건축기원 이 호 창
 주택건설과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지방건축기원 정 락 현
 중구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지방건축기원 이 회 재
 용산구 근무를 명함

영 선 과 지방건축기원 조 기 영
 용산구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지방건축기원보 정 호 극
 마포구 근무를 명함

성 북 구 지방건축기원보 허 태 범
 중구 근무를 명함

◎1972. 6. 27.

시 민 과 지방행정주사 조 정 태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시 민 과 지방행정주사보 강 기 성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영 등 포 구 지방행정주사 이 규 화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성 북 구 지방행정주사보 용 희 등

지방공무원법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성 북 구 지방행정주사	박 원 빈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영등포 구 지방행정서기보	서 문 철	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종 로 구 지방행정주사보	정 태 경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박 용 재
중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허 상 필	지방농림기사에 임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2 호봉을 급함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성북구 근무를 명함	
성북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강 판 호	토목시험소 지방토목기정 (소 장)	황 숙 재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검무를 면함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1972. 6. 28.	
중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이 주 성	보건사회국 지방의무기정 (보건계 1 과장)	윤 자 현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영등포보건소 지방의무기좌 (방역과장)	이 우 용
중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서 정 주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영등포 구 지방토목기사	오 세 민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수도사업소	
중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원 종 빈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에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의거 파면에 처함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성 동 구 지방토목기사	최 건 창
영등포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	이 대 섭	수도사업소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에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의거 파면에 처함	
중 구 지방행정서기보	이 성 환	서 대 문 구 지방축산기사보	최 용 수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지방수의사보에 임함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7 호봉을 급함	
성 북 구 지방행정서기보	여 흥 기	영등포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지방공무원법 제 69 조 1, 2 호의		농 정 과 지방축산기사보	문 현 철
규정에 의거 파면에 처함		지방수의사보에 임함	
용산구수도사업소 지방행정서기보	박 동 한	6 호봉을 급함	
		동대문구보건소 근무를 명함	

서울특별시수도국 시설과장 원에 의하여 그	토목기정 박원항 직을 면함
대통령령	

서울특별시